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의무 부과 및 제재 신설〉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61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1. 18.
- (3) 회 부 일 : 2024.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여 보건·의료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통합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보건·의료조합이 경영공시를 게을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합 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정관·규약·규정 등 서류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제88조제3항 제3호의2·제5호 및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2(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보건·의료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건·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 활동 상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현행	개정안
제88조(과태료) ①·② (생략)	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8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4조(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④ (생략)	5.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조합(이하 “보건·의료조합”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2월 기준 108개 보건·의료조합과 100개 의료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임.

□ 그러나 현행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보건·의료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할 의도로 조합원 명부를 허위 등록, 형식적 설립 조건을 맞추어 인가를 받아 운영하여 적발된 사건과, 보건·의료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조합원들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폐업한 사건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음.

1) 제46조의2(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① 보건·의료조합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조합이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여 제21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조합원 공동의 건강 개선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건·의료조합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악용되지 않도록 보건·의료조합 운영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원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의 운영상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경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등 경영과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조합원 및 일반 소비자에게 보건·의료조합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보건·의료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근거법령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경영공시의 의무를 규정하여 경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보임.

＜보건·의료조합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보건·의료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협동조합 기본법」 등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설립기준	• 조합원 500명, 출자금 1억원 이상 • 조합원 1인당 출자금 5만원 이상 • 의료기관 1개마다 상기 요건 충족	• 좌동
설립인가	• 시·도지사	• 기획재정부장관 -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위탁
사업내용	• 조합원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만 가능	•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사업(사업량의 40%이상)으로 해야함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총공급고 50% 이내에서 특정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가능	• 좌동
감독	• 시·도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공시	• 규정없음	• 경영에 관한 주요내용 공시²⁾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수정

□ 다만, 개정안은 경영공시 의무를 규정하면서 게시되는 위치를 보건·의료조합 및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정하고 있는데, 영세한 보건·의료조합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사입법례인 「협동조합 기본법」은 경영공시 규정을 두면서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³⁾하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규정⁴⁾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음.

□ 한편, 개정안은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서류비치 의무 위반행위와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에 대한 조합원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효한 법적 조치로 보임.⁵⁾

○ 현행법 제44조⁶⁾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4) 제83조의2(경영 공시)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5) 유사입법례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도 해당 의무 미이행 시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6)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조합이 경영공시를 게을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합 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15